별첨 1 “저작권 침해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저작권법 위반 사범 처리 현황

연도	사건접수	기소			불기소				
		구공판	구약식	소계	각하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기타	소계
2005	14,838	19	1,486	**1,505**	1,013	9,481	215	2,624	**13,333**
	(290)	(0)	(19)	**(19)**	(19)	(155)	(33)	(64)	**(271)**
2006	18,227	23	1,473	**1,496**	1,445	11,426	1,865	1,995	**16,731**
	(611)	(0)	(31)	**(31)**	(20)	(389)	(118)	(53)	**(580)**
2007	25,027	26	1,637	**1,663**	3,836	15,195	1,986	2,347	**23,364**
	(2,832)	(0)	(76)	**(76)**	(313)	(1,865)	(376)	(199)	**(2,753)**
2008	90,979	8	3,975	**3,983**	12,446	51,255	16,520	6,775	**86,996**
	(21,953)	(0)	(118)	**(118)**	(1,575)	(11,855)	(6,056)	(2,349)	**(21,835)**
2009	89,410	67	3,956	**4,023**	24,702	27,150	24,676	8,859	**85,387**
	(22,169)	(0)	(17)	**(17)**	(13,707)	(2,936)	(4,243)	(1,266)	**(22,152)**
2010	29,307	147	3,740	**3,887**	5,447	10,829	5,102	2,102	**23,480**
	(3,611)	(0)	(3)	**(3)**	(3,201)	(152)	(150)	(81)	**(3,584)**
2011	36,852	234	3,344	**3,578**	6,996	14,244	6,196	2,294	**29,730**
	(4,577)	(0)	(5)	**(5)**	(5,354)	(199)	(253)	(58)	**(5,864)**
2012	46,359	173	3,810	**3,983**	11,097	14,356	7,594	3,116	**36,163**
	(6,070)	(1)	(16)	**(17)**	(5,354)	(271)	(287)	(64)	**(5,976)**
2013	36,879	135	3,125	**3,260**	6,513	12,744	7,565	3,019	**29,841**
	(2,860)	(0)	(5)	**(5)**	(2,477)	(176)	(147)	(35)	**(2,835)**
합계	387,878	833	26,836	27,669	105,515	184,678	83,382	37,300	410,875

표 1 연도별 저작권법 위반 사범 처리 현황 (출처: 대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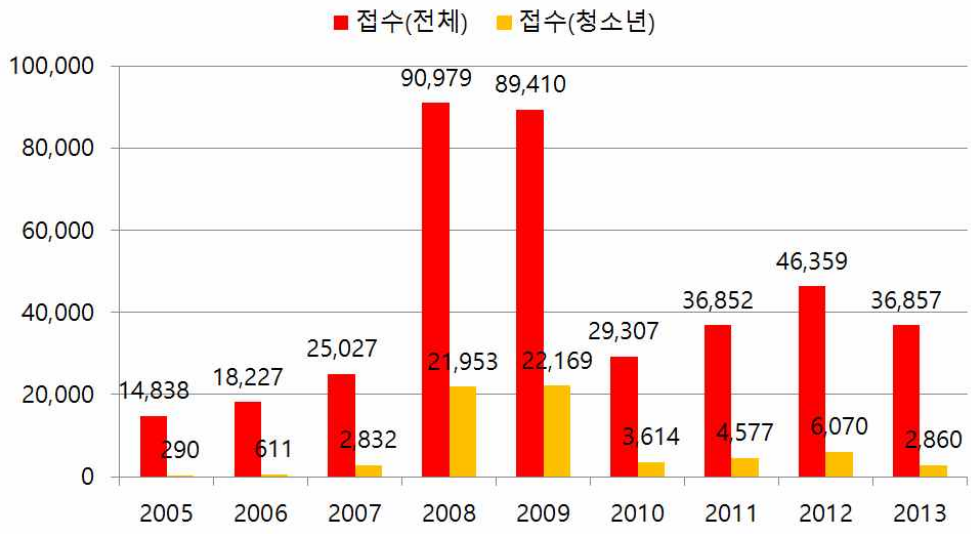

그림 1 저작권법 위반사범 처리 현황(자료: 대검찰청)

■ '합의금 장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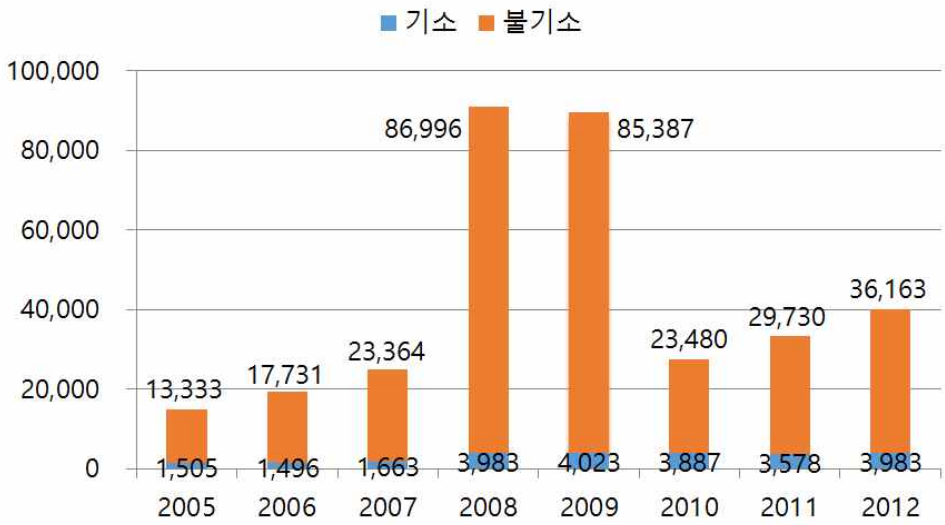

그림 2 기소 불기소 비율(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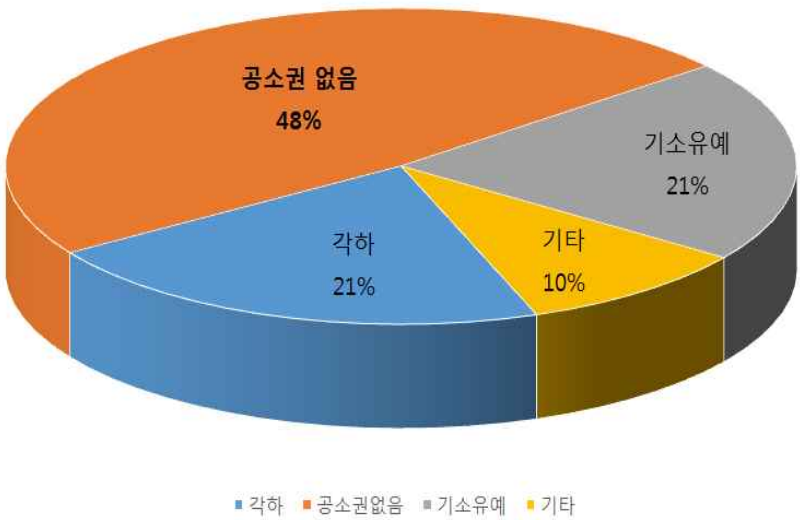

그림 3 불기소 내역 (전체)

■ 기소율

- 저작권법 위반 사범 기소율 평균(2005년~2013년): 7.35%
- 저작권법 위반 사범 구공판 평균(2005년~2013년): 0.22%
- 경제사범 기소율 평균(2009~2013): 23.7%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3.22배)

- 경제사범 구공판 평균(2009~2013): 7.27% (저작권법 위반사범의 **3,304배**)
- 2008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사건 약 10만건(90,970건) 중 정식 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8건에 불과함.
- 전체 고소사건 중 겨우 4.4%에 해당하는 3,975건만 약식재판에 넘어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불기소 처분되었음.
-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저작권법 위반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건이 1%를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음.

■ 청소년

- 대검찰청의 '2009 범죄분석'에 따르면 2008년에 범죄 혐의로 조사받은 미성년자 13만 4992명 가운데 저작권법 위반 혐의자는 무려 15%로 2만 272명.
- 총 범죄 중 미성년 피의자율은 6%이지만,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23%(부모 인적사항으로 기입한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미성년자 피의자 비율은 50% 이상에 달한다는 것이 저작권위원회의 견해라고 함[1]).

■ 미국과 비교

<저작권 침해죄 형사사건 현황>

구분	2009	2010	2011
수사 의뢰 건수 (명)	79 (118)	132 (174)	82 (118)
기소 건수 (명)	58 (75)	74 (83)	46 (70)
종결 건수 (명)	85 (103)	84 (95)	48 (64)

그림 4 김현철, '[미국]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 얼마나 될까', 저작권동향 제1호, 2012. 2. 3. 4면

1) 디지털타임즈, 한민옥 기자 |입력: 2009-12-07 21:02,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09120802010351699001

<저작권 침해죄 종결 사건 피고인별 세부 결과>

구분	2009	2010	2011
유죄 인정	81	84	42
유죄판결	2	1	2
공소기각	17	8	18
무죄판결	0	0	1
기타	3	2	1

<저작권 침해죄 유죄 (인정) 사건 양형별 결과>

구분	2009	2010	2011
미투옥	52	54	25
1월 ~ 12월	16	14	2
13월 ~ 24월	9	12	10
25월 ~ 36월	3	3	3
37월 ~ 60월	3	2	4
61개월 이상	0	0	0

별첨 2 “합의금 장사 사례”

■ 만화

K양은 미성년자이던 2012. 2.경(만19세) 한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B를 다운로드 받은 후 3곳의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였음. 저작권자가 K양을 고소하여 K양은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의 법률대리인과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법률대리인의 사무직원은 이 사건에 대한 합의금으로 550만 원을 요구. 아직 고소되지 않은 소설 3건이 더 있으니 합의를 하지 않고 소송을 하면 약 1,7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압박.(토론회 구주와 변호사 발제문)

■ 사진

웹사이트 디자인 업체인 B사는 비영리 단체의 홈 페이지를 제작하면서 사진 한 장을 사용하였음. 이 사진은 회원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공유하는 사이트에 있던 요리(봄 나물) 사진이었는데, 저작권자는 합의금으로 100만원 요구. 당사 저작권자는 이 사진이 포함된 약 4,000장의 사진 전집을 270만원으로 판매하고 있었음(정품 가격의 1,480배를 합의금으로 요구함 셈).

■ 이미지

비영리 평화단체 J의 행사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자는 정품 가격의 4배인 25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 단체 J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 종결. 당시 저작권 행세를 하던 자는 경찰 조사를 받음(권리없이 합의금 장사로 그 동안 약 100억원을 갈취했다는 혐의).

■ 글꼴(폰트) 저작권

글꼴은 이를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만 저작권이 있는데, 권리자들은 결과물(웹 사이트, 로고, 간판)에 권리 주장을 하며 고액의 패키지 구매나 합의금 요구. 이를 보다 못한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년 3월 “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 알기” 안내서 제작·배포.

■ 동영상 강의

동영상 강의를 인터넷 카페에서 구매한 대학생 K는 강의내용이 자기와 맞지 않아 중고로 팔았음. 학원은 K에게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200만원을 합의금으로 요구.

■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공학용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소매 가격을 약 3억원으로 갑자기 3배 인상. 저작권자는 법무법인과 합의금을 나눠 갖기로 하고,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나섰고 단속에 걸린 기업 P와 대표이사를 고소하여 합의금으로 약 10억원 요구. 결국 기업 대표는 무혐의, 법인은 벌금 100만원으로 종결.

별첨 3 “저작권 단체 주장에 대한 법률 검토 의견”

■ 입법 경과

○ 2013. 12. 19. 박혜자 의원 등 12인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발의(180일의 기간 동안 침해되는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

○ 2014. 4. 23. 김희정 의원, 김태년 의원, 이상민 의원, 박기춘 의원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문위 소위 상정(이하 제324회-교육문화체육관광소위제1차(2014년4월23일) 회의록 3~8면 참조)

○ 소위 회의록 4면 전문위원 보고 중 “이와 관련해서는 박혜자 의원님 안에서 180일의 기간 동안 침해되는 저작물의 총 소매가격이 5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로 하는 개정안이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소위 회의록 8면 소위 위원장(김희정 의원) 정리 발언: “6개월 동안 100만 원 이상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자구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 미국법의 “소매 가치가 1,000 달러 이상인 저작물을 복제·배포한 경우”(징역 1년 이하의 경범죄로 처벌), “소매 가치가 2,500 달러 이상의 복제물이나 음반”(중죄로 처벌)에 비해 훨씬 더 명확함.

○ 개정안은 “6개월 동안 100만 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범죄 구성 요건을 “피해 규모”로 명확히 하였음.

○ 변제일 의원안(2008. 12. 5. 발의, 임기만료로 폐기)의 경우 “침해된 권리의 총 소매가격”이라고 하여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음.

○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저작권단체연합회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으며, 원 단위까지 계산함 (http://www.cleancopyright.or.kr/information/report.php).

○ 이제 와서 피해 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은 자가당착임.

○ 2014년 연차보고서 144면의 표

표Ⅳ-24 ▌ 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유통경로별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비교

구분	2012년		2013년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온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오프라인 불법복제물로 인한 합법저작물 시장 침해규모
음악	513,702,677,333원	70,276,683,794원	498,027,999,522원	111,755,517,161원
	88.0%	12.0%	81.7%	18.3%
영화	604,009,800,245원	53,522,470,123원	710,697,636,395원	62,287,248,214원
	91.9%	8.1%	91.9%	8.1%
방송	147,122,375,923원	12,240,667,923원	163,431,020,025원	12,613,010,630원
	92.3%	7.7%	92.8%	7.2%
출판	187,865,279,286원	109,889,893,747원	233,108,610,538원	88,138,619,164원
	63.1%	36.9%	72.6%	27.4%
게임	366,985,065,194원	152,935,281,227원	351,290,756,744원	167,307,078,038원
	70.6%	29.4%	67.7%	32.3%
합계	1,819,685,197,981원	398,864,996,814원	1,956,556,023,224원	442,101,473,207원
	82.0%	18.0%	81.6%	18.4%

■ 특허법 등 다른 법률과의 체계 문제

○ 특허법은 산업적 규모의 침해인 경우에만 형사 처벌함(특허법 제94조(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피해 금액에 상관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 따라서 다른 법률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주장은 관련 법률을 잘못 이해한 주장임.

■ 한미 FTA 위반 문제

○ 개정안이 한미 FTA 위반이라면 미국이 먼저 위반을 하였다고 주장하여야 함.

○ 한미 FTA는 “각 당사국은 최소한 상업적 규모의 고의적인 상표위조나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 침해의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한다”고 함(제18.10조 제26항). “상업적 규모”를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 재량에 속함.

○ 문화체육관광부도 개정안은 한미 FTA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임.

미국 저작권법 제506조(a)(B)는 180일 동안, 총 소매가격 1,000 불 이상인 경우 형사절차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이 한미 FTA 제18장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 (저작권정책과, 박미경, 3704-9468)

○ 미국 저작권법은 형사절차가 적용되는 대상으로, '상업적 이익이나 사적인 재정적 이득을 목적으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제506조(a)(1)(A)),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특정한 180일의 기간 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호되는 저작물의 1,000 달러 이상의 총 소매 가치를 가지는 복제물 또는 음반의 복제와 배포에 의한 경우(제506조(a)(1)(B))'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한미 FTA 규정 제18.10.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절차 적용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것으로, 특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국 저작권법 제506조(a)(1)(B)는 한미 FTA 규정 제18.10.26조 '가'의 "중대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자국 실정에 맞게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의 동 규정은 한미 FTA에 위반될 소지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문화산업계 위기 문제

❍ 개정안보다 더 엄격한 미국에서도 문화산업 붕괴 따위의 얘기는 나오지 않음.

❍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는 개정안에서도 해결이 가능함(개정안의 제1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문화산업계의 붕괴 우려로 제시한 저작권 단체들의 피해 규모는 산정 자체가 잘못 되었음(아래 "피해액 산정 문제" 참조).

■ 피해액 산정 문제

❍ 저작권 단체들은 개정안은 불법음원 16만곡을 유통해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주장함. 이는 합법시장 정액제 스트리밍의 곡당 가격이 6원이라는 점에 근거로 산출한 것임.

❍ 이는 가정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엉터리 수치임.

❍ 개정안은 분명히 "피해금액"이라고 했음.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남. 가령 음악 저작권 침해물이 인터넷으로 유통된 경우, 피해는 정품 음악 테이프나 CD 시장, 온라인 다운로드 시장에서도 발생함.

❍ 그런데 저작권 단체의 주장은 피해가 오로지 음악듣기 시장에서만 발생한다고 가정한 셈이어서 심각한 오류를 범했음.

○ 또한 저작권 단체들은 개정안이 허용하는 사례를 아래와 같다고 주장함.

콘텐츠 분야	100만원 기준
음악	1인이 6개월 간 온라인음원사이트에서 결재한 금액의 약 33배
방송물,애니메이션, 영화	1인이 6개월간 약 1,000편의 영상물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수준
어문업계	1인이 6개월간 약 1000권, 매수로 20만매의 소설, 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
만화, 사진	1인이 6개월간 만화 5,000권, 사진 15,000컷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
소프트웨어	1인이 약 28.5개의 PC에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금액

○ 위 사례 역시 가정 자체가 잘못 되었음.

○ 합법 시장의 단가는 음악의 경우 다운로드 150원, 스트리밍 6월, 테이프 5,000원, CD 15,055원임(2014년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94면).

○ 영화의 경우에는 VOD 3,754.3원, 다운로드 5,315.5원, 극장 관람 7,271원, DVD 27,548원임.

○ 따라서 저작권 단체가 제시한 사례는 적게는 수십배 많게는 수백배 부풀린 것임(아래 표 참조).

표Ⅲ-1 ▌ 불법복제물 및 합법저작물 시장의 콘텐츠별·형태별 단가

콘텐츠	형태	구분	불법	합법
음악	온라인	MP3 및 스트리밍	- P2P : 1.7원(용량비례) - 웹하드 : 1.7원(용량비례) - 포털 : 0원 - 토렌트 : 0원	- 다운로드 : 150원(1곡당) - 스트리밍 : 6원 ※ 무료제공 음악은 산정에서 제외
	오프라인	테이프 및 CD	- 테이프 : 3,000원 - CD : 5,300원 - SD카드, USB 등 : 15,000원	- 테이프 : 5,000원 - CD : 15,055원
영화	온라인	다운로드 및 VOD	- P2P : 272.8원(용량비례) - 웹하드 : 272.8원(용량비례) - 포털 : 0원 - 토렌트 : 0원	- VOD : 3,754.3원(1편당) - 다운로드 : 5,315.5원(1편당) ※ 무료제공 영화는 산정에서 제외
	오프라인	노점상 DVD	- DVD : 2,500원	- 극장 관람 : 7,271원 - DVD : 27,548원
방송	온라인	다운로드 및 VOD	- P2P : 88.2원(용량비례) - 웹하드 : 88.2원(용량비례) - 포털 : 0원 - 토렌트 : 0원	- VOD : 800원(1편당) - 다운로드 : 1,000원(1편당) ※ 무료제공 방송은 산정에서 제외
	오프라인	노점상 DVD	- DVD : 2,500원	- DVD : 9,451원
출판	온라인	소설·수필	- P2P : 10.1원(50.6MB)(용량비례) - 웹하드 : 10.1원(50.6MB)(용량비례) - 포털 : 0원 - 토렌트 : 0원	〈e-book 시장(평균)〉 소설·수필 : 8,172원 만화 : 4,996원 학습교재(참고서) : 5,834원 학술서적 : 10,141원
		만화	- P2P : 10.3원(51.4MB)(용량비례) - 웹하드 : 10.3(51.4MB)(용량비례) - 포털 : 0원 - 토렌트 : 0원	